

청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11972(본소), 2017나11989(반소) 판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 통행권 확인]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11972(본소), 2017나11989(반소)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4. 6 선고 2016가단2259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18. 1. 25.

판결 선고 2018. 2. 22.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4. 6. 선고 2016가단22595(본소),

2016가단23994(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충주시 G 전 98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1 참고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59m² 지상 비닐하우스, 같은 참고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 부분 60m² 지상 비닐하우스, 별지2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21m² 지상 주택, 같은 참고도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 부분 2m² 지상 화장실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선택적으로,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참고도 표시 2, 3, 4, 5, 6, 7, 8, 2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 (다) 부분 116m²에 대하여 피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참고도 표시 5, 6, 7, 8, 28, 2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 부분 77m²에 대하여 피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4 참고도 표시 1, 2, 3, 32, 31, 30, 29, 17, 18, 19, 20, 21, 22, 23,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나) 부분 127m²에 대하여 피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4 참고도 표시 1, 2, 25, 26, 27, 28, 18, 19, 20, 21, 22, 23,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85m²에 대하여 피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는 위 1)항 기재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통행방해금지청구를 하였다가 2018. 1. 19.자 항소취지 및 이유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반소청구취지를 위 2), 3), 4)항 기재와 같이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로서는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참고도 표시 2, 3, 4, 5, 6, 7, 8, 2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116㎡, 또는 ②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3 참고도 표시 5, 6, 7, 8, 28, 2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7㎡, 또는 ③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4 참고도 표시 1, 2, 3, 32, 31, 30, 29, 17, 18, 19, 20, 21, 22, 23,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나) 부분 127㎡, 또는 ④ 이 사건 토지 중 별지4 참고도 표시 1, 2, 25, 26, 27, 28, 18, 19, 20, 21, 22, 23,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85㎡를 통행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위 네 가지 통행로 중 한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피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 금지를 구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장의 일부 통행로의 경우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중앙 부분을 관통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통행로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양쪽으로 나뉘는 결과가 되어 원고의 토지 이용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②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충주시 F에 소재한 구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에 통행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주장의 반소 청구취지 기재 일부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공로로 나가는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성묵

판사이정아

판사조민식

별지